

#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再分配 效果

郭 泰 元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負擔의 累進度 혹은 逆進도를 측정할 수 있는 指標을 개발하고 이 指標을 이용해 同 稅制의 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課稅대상품목에 대한 所得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稅負擔의 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特別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上記 逆進性指數를 試算하였다. 試算結果는 全國的인 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特別消費稅 課稅대상과 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試算結果에 의하면 特別消費稅 같은 個別消費稅로서 所得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稅制의 改善은 外部效果 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所得재분배기능은 副次的 目的으로 고려하는 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I. 序 論

間接稅의 負擔이 逆進的이라는 것은 하나의 通說처럼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租稅體系에서 間接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인데 이 비중을 낮추어 直接稅의 役割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결국은 間接稅의 부담이 逆進的이라는 假說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間接稅 부담이 대체로 逆進的이라는 점은 실증적인

筆者：本院 研究委員

\* 초고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준 外國語大 崔 洸 教授와 本院의 楊秀吉·李啓植 博士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계산과정에서 여러 모로 협조해 준 統計局의 김경중 국장과 신호중 사무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전산처리, 원고 정리 등에 큰 도움을 준 이재학·조성민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본고의 모든 남은 오류가 저자의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간접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는 附加價値稅의 單一稅率 적용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여 도입되었다. 물론 이것이 법에 明示의므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이 대부분 고소득층의 消費品目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高價品 혹은 奢侈品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급속한 所得增大와 技術發展 등에 따른 消費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品目 및 稅率調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逆進性 緩和라는 이 稅制의 당초 機能은 최근에 와서 크게 후퇴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特別消費稅를 가지고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더라도 우선 特別消費稅가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實證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반드시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 같은 稅目이 아니더라도 個別消費稅 項目의 所得分配側面에서의 效果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本稿는 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特定支出

項目에 대한 個別消費稅가 分配面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指標를 개발하고 이것의 실증적 적용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다음 章에서는 기왕에 사용되고 있는 租稅의 累進度 測定指標들을 개관하고 第III章에서는 個別消費稅의 逆進性을 나타내는 새로운 指標를 제시한다. 그리고 第IV章에서는 1978, 1984 및 1985년 우리나라 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支出項目別로 이 指標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第V章에 간단한 結論을 첨부한다.

## II. 租稅負擔의 累進性測定 指標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租稅負擔의 累進性 測定指標들의 內容과 特性을 간략하게 살펴본다<sup>2)</sup>.

租稅의 累進性指標는 視角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이 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지표들은 租稅負擔의 所得階層別 分佈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의된 累進性指標의 값을 결정하는 要因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도 累進性指標를 분류할 수 있다.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租稅函數(tax function)만을 가지고 어떤 租稅가 累進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의 累進性指標는 構造的 累進性指數

1) 李啓植(1986)에 의하면 間接稅 전체의 負擔分佈는 所得基準의 경우 逆進的인 구조를 나타내며 消費支出基準의 경우에는 거의 比例的인 構造를 나타낸다.

2) 本章의 內容은 Kiefer(1984)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李啓植(1986)에서도 중요한 累進性指標들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後者의 研究는 우리나라의 資料를 이용하여 間接稅의 몇 가지 累進性指標들을 계산한 바 있다.

(structural progressivity index)라고 말한다. 한편 租稅函數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所得分配 狀態까지도 指標값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된 경우에는 이것을 分配的 累進性指數(disributional progressivity index)라고 부른다.

實證的인 分析에서는 주로 後者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個別消費稅의 累進性을 따질 때는 租稅構造 자체에 累進性이나 逆進性의 要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分配的 累進性指數만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分配的 累進性指數의 대부분은 지니係數(Gini index)와 같은 集中度指數나 로렌즈曲線(Lorenz curve)과 같은 集中曲線의 概念을 이용하고 있다. 대개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稅負擔分布를 單一指標로 요약하거나 稅前 및 稅後의 所得分配 狀態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所得分配指標로서 지니係數가 가지고 있는 결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지니係數가 함축하고 있는 社會厚生函數의 特性中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社會厚生函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累進性의 測定을 시도하기도 한다. 本稿에서는 주로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指數는 本章의 末尾에서 概念만 간단하게 설명한다.

## 1.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標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Musgrave-Thin(1948)의 有效累進度 (effective progression : EP)

이 指數는 다음 式과 같이 稅前 및 稅後의 지니係數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EP = \frac{1-G_a}{1-G_b}$$

이 式에서  $G_a$ 는 稅後의 지니係數이고  $G_b$ 는 稅前의 지니係數이다. 문제의 稅制가 비례적이면  $G_a=G_b$ 이어서  $EP=1$ 이 된다. 稅制導入後 稅後 所得分配가 개선되면  $G_a < G_b$ 가 되므로  $EP > 1$ 이 된다. 반대로  $EP < 1$ 이면 이 稅制는 逆進的의이다.  $EP$ 가 클수록 더 累進的인 稅制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니係數의 범위가 0에서 1까지이므로 이론적으로  $EP$ 는 0에서  $\infty$ 까지 사이의 값을 갖는다<sup>3)</sup>.

나. Pechman-Okner指數(PO)

Pechman-Okner(1974) 및 Okner(1975)는 稅制導入에 의한 지니係數의 變化率로 稅制의 累進度を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들의 指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O = \frac{G_a - G_b}{G_b}$$

稅制導入後 지니係數가 감소하면  $PO < 0$ 이 되고 지니係數가 증가하면  $PO > 0$ 이 되므로  $PO$ 는  $EP$ 와는 달리 값이 작을수록 稅制가 상대적으로 더 累進的임을 나타내는 指數이다.  $PO=0$ 이면 稅制가 比例的이고  $PO > 0$ 이

3)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母集團의 總家口數를  $n$  이라고 할 때 지니係數의 範圍는 0에서  $1-1/n$  이 된다. 물론  $n$ 이  $\infty$ 에 접근하면 지니係數의 理論的 上限은 1에 收斂한다.

면 稅制는 逆進的이다. 이 값이 변할 수 있는 범위는  $-1$ 에서부터  $+\infty$ 까지이다.

#### 다. Reynolds-Smolensky 指數 (RS)

Reynolds-Smolensky(1977)는 稅後의 지니係數와 稅前의 지니係數의 단순한 차이로써 累進性을 측정하였다. 즉,

$$RS = G_a - G_b$$

그러므로  $RS < 0$ 이면 이 稅制는 累進的이고  $RS = 0$ 이면 比例的, 그리고  $RS > 0$ 이면 逆進的이 된다. RS의 可變範圍는  $-1$ 에서  $+1$ 이다. 그러나 지니係數 자체가 경험적으로  $0.3 \sim 0.5$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RS값의 變化範圍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 라. Khetan-Poddar 指數 (KP)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指數들은 사실상 똑같은 情報, 즉 稅前 및 稅後의 지니係數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 결함은 稅後 지니係數를 사용하기 때문에 總稅收規模에 따라서 指數값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Khetan-Poddar(1976)가 제시한 累進性指標는 이들과는 달리 稅前 지니係數와 稅負擔 自體의 集中度指數를 비교함으로써 分析對象稅制 累進性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 指數는 稅收規模와는 獨立的이며 租稅의 상대적인 負擔分布에만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累進性指標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累進性指標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P = \frac{1 - G_b}{1 - C_t}$$

여기서  $C_t$ 는 稅負擔의 集中度指數이며 지

니係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KP 指數의 變動範圍는  $0$ 에서  $\infty$ 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_b$ 가  $1$ 일 때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할 때는  $C_t$ 값도  $1$ 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KP값은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하게  $KP = 0$ 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KP가  $1$ 이면 租稅制度는 比例的이고  $1$ 보다 작으면 逆進的, 그리고  $1$ 보다 크면 累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Kakwani 指數 (P)

Kakwani(1977 a, b)도 稅前 지니係數  $G_b$ 와 稅負擔의 集中度指數  $C_t$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指數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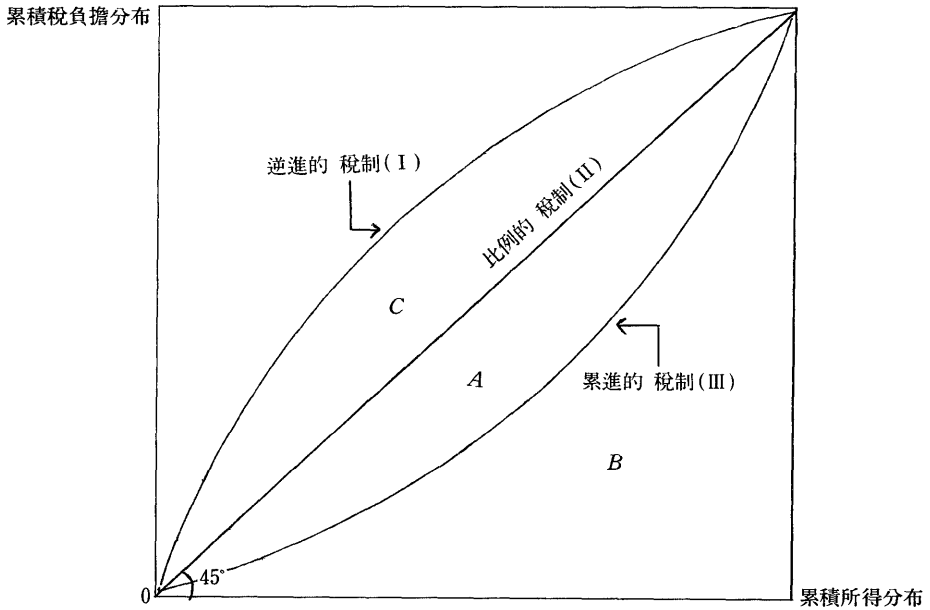
$$P = C_t - G_b$$

稅負擔의 集中度가 稅前의 지니係數보다 더 낮으면  $P < 0$ 이 된다. 이 경우에는 稅制가 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고  $P = 0$ 이면 比例的, 그리고 稅負擔의 集中度가 높아서  $P > 0$ 이면 이 稅制는 累進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指數가 다음에 설명할 KPS指數와 함께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長點은 稅制가 몇 가지 다른 종류의 稅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全體 稅制의 P 指數는 각 個別稅의 P 指數의 加重平均値와 같다는 점이다. 이때 加重値는 각 個別稅의 平均實效稅率(혹은 稅收規模)이다.

#### 바. Khetan-Poddar-Suits 指數 (KPS)

Khetan-Poddar(1976) 및 Suits(1977)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매우 비슷한 指數가 개발되었다. KPS는 稅負擔의 集中度를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앞의 두 가지 指數와 비슷하나 集中度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다.

[圖 1] 累積稅負擔比率曲線과 累進性



즉 이들은 稅前所得에 대비한 稅負擔의 相對的 集中度指數를 계산하는 것이다.

[圖 1]에서처럼 水平軸을 累積所得分布로 하고 垂直軸을 累積稅負擔分布로 하여 로렌즈曲線과 같은 集中度曲線을 그리면 이 曲線의 모양으로 稅制의 累進度를 判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集中度曲線이 45°線과 일치하면 累積所得分布와 累積稅負擔分布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稅制는 比例的이다. 集中度曲線이 45°線의 위쪽에 있으면 稅制는 逆進的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累進的이다.

Suits는 이 그림을 이용하여 지니係數 計算과 같은 방식으로 集中度指數를 산출하였다. 즉 만일 累積稅負擔比率曲線이 [圖 1]의 맨 아래쪽 曲線(累進的 稅制)과 같다면 Suits의 累進性指數( $KSP_s$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PS_s = \frac{\text{面積 A}}{\text{面積 A} + \text{面積 B}}$$

$KPS_s=0$ 이면 稅制는 比例的이고,  $KPS_s>0$ 이면 累進的이며  $KPS_s<0$ 이면 逆進的인 稅制라고 判別한다. 그림에서 만일 集中度曲線이 曲線 I 과 같으면 지니係數와 같은 방식으로  $KPS_s$ 를 계산할 때 面積 C는 마이너스가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PS_s$ 는 이론적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Khetan-Poddar가 사용한 指數( $KPS_k$ )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Suits의 指數와 다소 상이한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KPS_k = 1 / (1 - KPS_s)$$

이 값은 0.5에서  $\infty$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보다 작으면 該當稅制는 逆進的이고 1과 같으면 比例的, 그리고 1보다 크면 累進的

이다.

## 2. 一般的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지니係數가 함축하고 있는 社會厚生函數는 社會厚生에 관한 일반적 통념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社會厚生函數에 근거한 所得分布指數가 개발되었다<sup>4)</sup>. 이指數는 均等分布等價(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의 所得水準 概念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不平等을 기피하는 社會厚生函數에 있어서 주어진 所得水準과 分配狀態로서 달성할 수 있는 社會厚生函數의 값과 동일한 厚生水準을 完全均等한 所得分配狀態로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平均所得水準을 나타낸다. 이것이 Yede로 표하면 所得分布指數(I)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 1 - \frac{Yede}{\bar{Y}}$$

여기서  $\bar{Y}$ 는 平均所得을 나타낸다. 원래부터 완전하게 균등한 소득분배를 가지고 있다면  $Yede = \bar{Y}$ 이므로  $I = 0$ 이 된다. 그러나 원래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bar{Y}$ 가 주어졌을 때 社會厚生函數의 값은 낮을 것이며 따라서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Yede의 값은 낮을 것이므로 I값은 커진다.

새로운 所得分配指數를 이용하여 Black-orby-Donaldson(1983)은 다음과 같은 累進性指數를 제시하였다.

$$BD = \frac{1 - I_a}{1 - I_b}$$

여기에서  $I_a$ 와  $I_b$ 는 각각 稅後 및 稅前의 I指數이다.  $BD = 0$ 이면 稅制는 比例的이고 正이면 累進的, 負이면 逆進的이 된다.

이 밖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나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不平等忌避과라미터(inequality averse parameter)값이 주어진 구체적인 社會厚生函數를 가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III. 個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係數

우리의 문제는 個別消費稅의 累進性 혹은 逆進性を 측정하는 것인데 우선 어떤 유형의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明示的으로 社會厚生函數를 가정해야 하는指數들은 이론적으로는 더 합리적인指數일 수 있으나 社會厚生函數의 形態와 不平等忌避係數를 비롯한 파라미터값의 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應用分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니指數를 이용한 指標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니指數를 이용한 指標中에서 累進性指標가 稅收水準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個別消費稅의 累進度分析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보석에 대한 特別消費稅와 세탁기에 대한 特別消費稅中 어느 것이 더 累進의냐 하는 문제에 稅收規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累進的 指標를 가지고 대답한다면 비록 보석에 대한 지출이 더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탁기로부터의 稅收規模가 더

4) Kolm(1969), Atkinson(1970), Sen(1973).

커서 세탁기에 대한 特別消費稅가 더 累進的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個別項目으로부터의 個別消費稅 稅收規模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지니係數로 보면 매우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稅收規模와 관련을 갖지 않은 指數들(KP, P, KPS)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稅負擔分布의 集中度이다. 특히 個別消費稅의 累進度分析에 있어서 可用한 데이터는 所得階層別 課稅項目別 稅負擔額이 아니고 支出額이다. 稅率이 일정한 것으로 假定하면 支出構成比의 集中度와 稅負擔의 集中度는 같아진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국내소비자에 대한 免稅등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사후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稅負擔의 集中度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家計調査資料에 이와 같은 정보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支出構成比의 集中度만 가지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稅制改編에 있어서 個別消費稅 課稅對象項目이나 혹은 課稅對象이 될 項目에 대한 累進度的 分析은 事後的인 累進度보다는 事前的인 累進度に 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事後的으로 稅負擔集中度에 영향을 주는 免稅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合理化된다.

本章에서 지니係數에 個別消費稅 函數를 도입함으로써 個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效果 判定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指標들보다 좀더 단순한 指標를 導出한다. 이 指標는 결국 KP나 P 指標를 다소 變形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지니係數와 稅負擔 集中度間의 關係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租稅가 도입되기 전의 지니係數(G)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1-2\sum_{j=1}^n \phi_j/n \dots\dots\dots(1)$$

단 여기서  $\phi_j$ 는 累積所得比率이고 n은 總家口數 혹은 分位數를 나타낸다. G를 다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G=1-\frac{2}{nY}\sum_{j=1}^n \sum_{i=1}^j y_i \dots\dots\dots(2)$$

여기에서  $y_i$ 는 i번째 家口の 所得(혹은 i번째 分位の 平均所得)을 나타내며 모든  $y_i$ 에 대하여  $y_i < y_{i+1}$ 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서 i는 所得이 낮은 家口(혹은 分位)부터 順次的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Y=\sum_{i=1}^n y_i$ , 즉 所得의 總合計(혹은 各分位 平均所得의 合計)를 나타낸다.

租稅를 지니係數에 導入한다. 所得이  $y_i$ 인 家口가 부담하는 稅金을  $z_i$ 라고 하고 이러한 종류의 稅金 總合計를 Z라고 하면(즉  $Z=\sum z_i$ ) 稅後의 지니係數( $G_a$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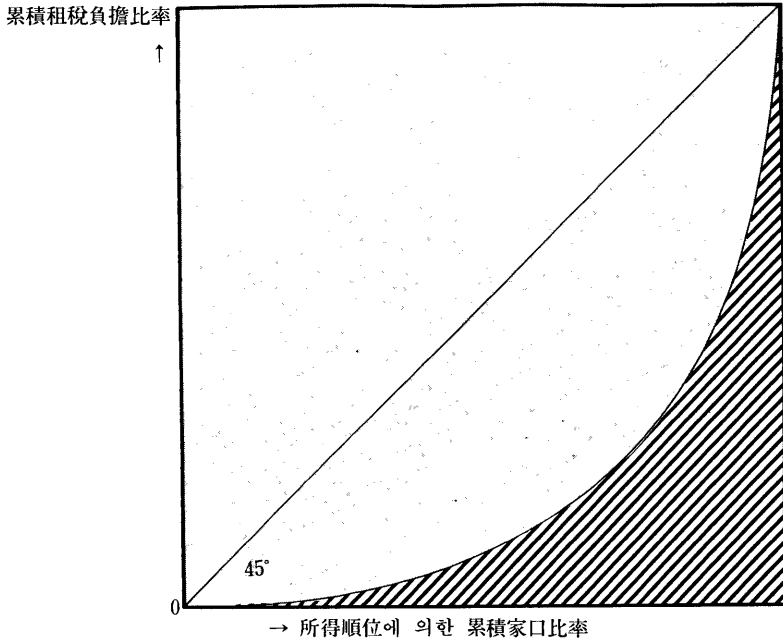
$$G_a=1-\frac{2}{n(Y-Z)}\sum_{j=1}^n \sum_{i=1}^j (y_i-z_i) \dots\dots(3)$$

稅後의 로렌츠曲線 아래쪽의 面積을 A라고 하면 式(3)에서 이것을 바로 導出할 수 있다.

$$\begin{aligned} A &= \frac{1}{n(Y-Z)} \sum_{j=1}^n \sum_{i=1}^j (y_i-z_i) \\ &= \frac{nY}{n(Y-Z)} \cdot \frac{\sum_{j=1}^n \sum_{i=1}^j y_i}{nY} - \frac{nZ}{n(Y-Z)} \\ &\quad \cdot \frac{\sum_{j=1}^n \sum_{i=1}^j z_i}{nZ} \dots\dots\dots(4) \end{aligned}$$

즉 이것은 稅前의 로렌츠曲線 아래쪽 面積과 累積所得比率 대신 累積租稅負擔比率을 가

[圖 2] 累積租稅負擔比率曲線과 稅負擔集中度



지고 만든 로렌츠曲線 아래쪽 面積의 加重平均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租稅가 지니係數로 측정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圖 2]의 累積租稅負擔比率曲線 아래쪽의 面積이다. 이것은 租稅負擔의 集中度를 逆으로 나타낸다.

이 面積을  $m$ 이라고 나타내면  $m$ 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 = \frac{\sum_{i=1}^n \sum_{j=1}^j z_i}{nZ} \dots \dots \dots (5)$$

한편 特定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租稅函數를 보다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z_i = t s_i y_i \dots \dots \dots (6)$$

여기서  $s_i$ 는  $i$ 번째 家口가 문제의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에 지출하는 支出比重을 나타내고  $t$ 는 從價稅로 假定한 特別消費稅 稅率을 나타낸다.

따라서 式 (5)의  $m$ 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m = \frac{\sum_{i=1}^n \sum_{j=1}^j s_i y_i}{n \sum_{i=1}^n s_i y_i} \dots \dots \dots (7)$$

즉  $m$ 은 特別消費稅의 稅率  $t$ 와는 무관하며 다만 문제의 品目에 대한 社會全體의 支出中에서 特定家口 혹은 所得分位가 차지하고 있는 支出比重의 分布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支出比率( $\frac{s_i y_i}{\sum s_i y_i}$ )을  $r_i$ 라고 부르기로 하면 式 (7)로부터 다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sup>5)</sup>.

5)  $m$ 은 앞의  $KP$ 指數 혹은  $P$ 指數 등에 있어서의  $C_i$ 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이것은 郭泰元(1986)에서 정의된  $M$ 을  $n$ 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



$$m = \frac{1}{n} \{nr_1 + (n-1)r_2 + \dots + 2r_{n-1} + r_n\}$$

$$= \sum_{i=1}^n \frac{(n-i+1)}{n} r_i \dots \dots \dots (8)$$

그리고 이것은 [圖 2]에서 垂直軸의 累積租稅負擔比率을 累積  $r_i$ 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特別消費稅의 所得階層別 負擔分布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 支出比重的 所得階層別 分布와 동일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r_i$ 는 정의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r_i$ 의 합계는 1이 되어야 하므로 式 (8)에서 볼 때  $m$ 의 값은  $\frac{1}{n}$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문제의 課稅對象品目이 最下位所得階層에 의해서만 소비되는 품목이라면  $r_1=1$ 이고  $r_j=0$  ( $i \neq n$ )이므로  $m=1$ 이 될 것이다.

위의 式 (8)을 보면 앞에서 정의한  $m$  係數가 매우 구체적인 社會厚生函數 혹은 社會的加重值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所得序列에 따라 最下位 所得家口(혹은 階層)에  $2/(n-1)$ 이라는 社會的加重值를 부여하고 있으며  $n$  번째 계층, 즉 제일 높은 계층의加重值是  $2/(n-1)$ 로 最下位所得階層에 부여한加重值의  $2/n$ 에 해당한다. 그리고 隣接階層間의 所得隔差에 관계없이 한 계층이 변할 때마다 加重值의 값은  $2/n(n-1)$  만큼씩 변동한다.

이 係數의 값이 클수록 特別消費稅의 負擔이 低所得層에 集中되는 것이므로 지니係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m$ 을 이용하여  $G_a$ 를 다시 쓰면 다음 식을 얻는다.

$$G_a = 1 - 2 \left\{ \frac{nY}{n(Y-Z)} \cdot \frac{\sum_{i=1}^n \sum_{j=1}^j y_i}{nY} - \frac{nZ}{n(Y-Z)} \cdot m \right\} \dots \dots \dots (9)$$

式 (10)에서  $G_a$ 를  $m$ 에 관해 偏微分하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

$$\frac{G_a}{m} = \frac{2Z}{Y-Z} \dots \dots \dots (10)$$

$Z$ 가  $Y$ 보다 클 수 없으므로  $G_a/m > 0$  이며  $Z$ 값이 커짐에 따라  $m$ 의變動에 대한  $G_a$ 의變動이 민감해짐을 보여준다. 이 결과도 매우 상식적인 것으로 아무리 高所得層에 消費가 集中된 '理想的' 特消費稅課稅品目に 課稅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課稅로부터의 稅收가 크지 않다면, 즉 이 品目에 대한 지출이 크고 稅率도 높지 않다면 실제적인 所得分配 改善效果는 미미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m$  係數가 낮은 품목일수록 상대적으로 所得分配 改善效果가 좋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임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特別消費稅를 과세하는 것이 所得분배를 개선할 것인가 악화시킬 것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m$  係數는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 選定에 있어서 所得再分配效果와 관련된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 이 기준은 당연히 현재의 所得분배상태, 즉 稅前 지니係數  $G$ 에 의존하게 된다. 이 기준이 되는  $m$ 의 係數의 값을  $m^*$ 라고 표시하기로 하면  $m^*$ 는 다음 條件을 만족하는 값이어야 한다.

$$G_a - G < 0 \dots \dots \dots (11)$$

式 (2)와 式 (9)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 의 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m^* < (1-G)/2 \dots \dots \dots (12)$$

이 式에 의하면  $G$ 가 커질수록  $m^*$ 의 값이 작아진다.

稅前 所得分配狀態가 나쁠수록  $m$ 이 더 낮은 품목을 찾아서 課稅해야 所得分配改善效果가 생긴다. 稅前 所得分配狀態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個別消費稅로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 소비가 소득분배보다 더 심하게 高所得層에 집중된 품목을 찾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해서  $G$ 가  $(1-\frac{1}{n})$ 이면  $m$ 은  $\frac{1}{2}$ 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特定品目の 消費가 완전히 最上位所得階層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라도  $m$ 은  $\frac{1}{n}$ 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個別消費稅를 가지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sup>6)</sup>.

한편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해서  $G$ 가 0인 경우  $m$ 은  $\frac{1}{2}$ 보다 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m$ 이  $\frac{1}{2}$ 보다 작은 품목이 있다면 여기에 特別消費稅를 과세함으로써 소득분배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 가 0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분배를 더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결론이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바로  $G$ 가 0인 경우,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는  $m$ 이 一意的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균등하다고 해서 特定品目에 대한 지출도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m$ 은 소득의 순위

가 정해져야 정의될 수 있는 것이나  $G$ 가 0인 경우에는 소득의 순위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性格과 特性을 갖는  $m$  係數는 支出의 所得階層別 分布를 나타내는 有用한 要約 指標로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을 나타내는 指標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指標  $m$  係數를 앞으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係數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指標가 앞의  $KP$ ,  $P$  혹은  $KPS$  등의 指標와 다른 점은 稅前 所得分配 자체가 指數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稅負擔集中度의 變化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指標가 소득재분배의 방향은 나타내 주고 있으나 그 크기는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제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당 소비항목의 지출비중 혹은 해당 과세항목으로부터의 稅收規模가 실제의 소득재분배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이러한 분석은 대체로 租稅의 歸着에 대해서 강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暗默的으로 個別消費稅가 대부분 소비자에 귀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個別消費稅의 경우 需要 및 供給彈力性이 課稅項目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 차이에 따라 租稅의 歸着패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支出比重 혹은 稅收規模가 같고  $m$  係數가 같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재분배효과는 해당항목의 需要 및 供給彈力性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6)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政府의 收入 側面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支出側面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m$ 가  $1/n$ 인 품목에 높은 稅率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이것으로 다른 계층에 대한 移轉支出을 증가시키거나 支出歸着(expenditure incidence)이 最高所得階層에만 집중되지 않는 印의 支出項目을 증가시키므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 IV. 逆進性係數의 推定

앞에서 우리는 비교적 간단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係數를 導出하였다. 이 係數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종의 租稅負擔의 集中度 指數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分配的 累進性指標 (distributional progressivity index)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 係數는 個別消費稅의 단순한 租稅函數 때문에 特定項目에 대한 支出의 構成比만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지니係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판정하기 쉽다는 현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本稿에서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全國 全家口를 대상으로 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係數를 추정하지 못하고 都市家口만을 대상으로 하여 1978, 1984 및 1985년의 主要支出項目에 대한 個別消費稅 逆進性係數를 추정하였다.

資料는 經濟企劃院의 『都市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였다. 所得階層은 10分位로 구분하여 主要分析對象 支出項目別로 階層別 構成比를 계산하고 式 (8)을 이용하여  $m$ 係數를 계산하였다. 所得階層을 많이 구분할수록 보다 정밀한 逆進性係數를 계산할 수 있으나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測定의 目的이 실제의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정밀성이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수치로 요약된 集中度係數뿐 아니라 階層別 分布形態 자체를 참고할 필요가 생기는데 10分位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포의 모습 자체를 보는 것이 불편해진다.

主要支出項目에 대한 例示的 推定結果는 <表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表의 각 列 下段에는 都市家計의 지니係數와  $m^*$ 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 表에 나타난 推定結果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1) 이 表에 포함된 家計調查支出項目이 모두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이 아니며 (2) 特別消費稅 課稅對象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예컨대 寫眞機는 1개 價格이 30萬원 이상인 것만 課稅) 또 (3) 農家家口,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특히 (2)와 (3)의 條件은 대체로  $m$ 係數의 推定結果가 上向偏倚를 갖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혹은 課稅可能支出項目(表에서 \* 表를 붙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支出項目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앞의 사진기의 例에서와 같이 품질수준으로 課稅對象을 제한한다면  $m$ 係數가  $m^*$ 보다 낮은 항목은 훨씬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中의 상당항목은 이와같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품목들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 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비스業種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소비가 지출된 항목을 다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전제품, 기호품, 음료 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個別所得稅를 과세할 경우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가 전면적으로 도

<表 1> 主要支出項目의 m 係數 推移

特消稅 課稅對象物品 <sup>1)</sup>	家計調查支出項目	m 係數 <sup>2)</sup>		
		1978	1984	1985
보석, 진주, 장갑 등	기타장신구	0.390	0.391	0.418
귀금속	귀금속	0.322	0.293*	0.262*
가 구	장 룡	0.309	0.305*	0.301*
	장 식 장	0.520	0.304*	0.366
	침 대	0.208*	0.186*	0.202*
	응접세트	0.173*	0.270*	0.158*
	식 탁	0.424	0.282*	0.319
특수화장품	기타화장품	0.365	0.419	0.436
냉장고	냉장고	0.320	0.511	0.427
세탁기	세탁기	0.236*	0.284*	0.338
TV 흑백, 컬러	텔레비전	0.476	0.430	0.448
전기음향기	전 축	0.295	0.326	0.329
	녹음기	0.332	0.404	0.478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콘로	0.522	0.561	0.597
	가스기구	—	0.394	0.448
	보온밥통	0.471	0.486	0.517
승용자동차	개인교통유지수리	—	0.238*	0.229*
피아노	피아노	0.211*	0.154*	0.234*
고급시계	손목시계	0.371	0.380	0.338
고급사진기	카메라	0.185*	0.310*	0.415
커피, 코코아	커피	0.320	0.379	0.393
사탕	설 탕	0.466	0.475	0.487
청량음료	콜 라	0.413	0.484	0.484
	사이다	0.422	0.456	0.455
	기타탄산음료	0.444	0.450	0.452
빙과류, 발효유산성음료	유산균음료	—	0.440	0.449
천연과실음료	쥬 스	0.358	0.347	0.362
모사와 직물	신사복	0.337	0.343	0.326
	숙녀복	0.326	0.370	0.358
	양복지	—	0.325	0.314*
	양장지	—	0.309*	0.380
	실	0.434	0.425	0.447
非農家 지니係數		0.4118 <sup>3)</sup>	0.3655	0.3655 <sup>4)</sup>
m*		0.2941	0.3148	0.3173

註: 1) 課稅對象品目과 支出項目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課稅對象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特性과 稅率은 <表 3>에 정리되어 있음.

2) 都市家計調查資料에서 推定. 推定方法은 本文 參照.

3) 1976년 지니係數임.

4) 1984년 지니係數임.

5) \*表한 것은 m\*보다 작은 추정치들임.

입된 1978년과 1984 및 1985을 비교해 볼 경우 支出項目에 따라서는  $m$  係數가 상당히 크게 변화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으나 일정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많지 않다 (세탁기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特別消費稅 도입 당시보다 최근에 와서 特別消費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편 단기간내에서도  $m$  係數의 값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家計調查資料가 標本調査資料이므로 標本の變化에 따라  $m$  係數가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개별소비세를 통한 소득분배개선 노력에서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가능성은 家計調查資料로 추정된  $m$  係數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이 表에서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소득분배가 70년대 중반으로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m^*$ 의 값이 커지고 이에 따라  $m^*$ 보다 작은  $m$  係數를 갖는 支出項目의 數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가 나아질수록 個別消費稅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소득재분배효과는 支出側面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당초의 분배상태가 좋을수록 분배를 더욱 개선하는 支出政策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2> 와 <表 3> 에는 각각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主要項目別 稅收實績規模와

稅率 및 具體的 課稅對象의 條件 등이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m$  係數가 높은 품목들과 관련된 항목의 稅收比重은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이들의 소득분배개선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한편 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비중이 큰 稅源인데 앞의 表의 “개인교통유지수리”項目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상당한 분배개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면서 都市家計調査에 제대로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연구에 누락된 항목으로는 (1) 投錢機, 오락용 射倅機器, 기타 오락용품 (2) 당구 및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3) 공기조절기 (4) 모터보트, 요트 (5) 영사기, 촬영기 (6) 옹단 (7) 輕油 (8) LPG (9) 투전기시설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 스키장 등에 대한 입장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항목은 고소득층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실제 稅收規模面에서는 <表 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품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니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로 현저한 소득분배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흥업소등에 대한 과세는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稅率引上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稅收增大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V. 結 論

本稿는 個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效果를 추정할 수 있는 간단한 指標를 지니係數로부터

<表 2> 特別消費稅 項目別 稅收規模

(단위: 億원, %)

課稅對象	1978		1984		1985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1. 보석, 진주, 장갑등	1.3	0.0	1.2	0.0	0.8	0.0
2. 귀금속제품	33	1.0	58	0.7	59	0.6
3. 가 구	20	0.6	15	0.2	18	0.2
4. 특수화장품	35	1.1	93	1.1	102	1.1
5. 공기조절기	39	1.2	138	1.6	185	1.9
6. 냉장고	397	12.3	619	7.1	683	7.2
7. 세탁기	56	1.7	259	3.0	295	3.1
8. TV	284	8.8	769	8.9	536	5.6
9. 전기음향기	101	3.1	103	1.2	46	0.5
10.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63	1.9	18	0.2	17	0.2
11. 승용자동차	232	7.2	725	8.3	880	9.3
12. 피아노	-	-	108	1.2	113	1.2
13. 고급시계	-	-	0.3	0.0	0.9	0.0
14. 사진기	-	-	-	-	-	-
15. 커피·코코아	56	1.7	222	2.6	285	3.0
16. 사 탕	322	9.9	538	6.2	493	5.2
17. 청량음료	220	6.8	495	5.7	528	5.6
18. 병과류, 발효유 산성음료	27	0.8	181	2.1	222	2.3
19. 천연과실음료	-	-	80	0.9	102	1.1
20. 모사와 직물	40	1.2	67	0.8	62	0.7
21. 휘발유와 경유	1,205	37.1	3,265	37.6	3,946	41.5
22. 과세장소	28	0.9	218	2.5	225	2.4
23. 기 타	82.7	2.6	711.5	8.2	713.3	7.5
24. 小 計	3,159.3	97.4	7,972.5	91.8	8,798.7	92.5
總 計	3,242	100.0	8,684	100.0	9,512	100.0

註: 輸入分은 포함되지 않았음.

도출하고 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이 指標值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個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係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指標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많은 항목들이 뚜렷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個別消費稅 對象品目들이 모두 고소득층에 집중된 支出項目에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個別消費稅制가 지니係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는 것처럼 이것은 垂直的 衡平을 提高시키면서 水平的 衡平을 沮害할 가능성이 크다. 各 家計의 特定品目에 대한 선호도는 반드시 소득수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말할 수 있는 이 研究의 政策的

입된 1978년과 1984 및 1985을 비교해 볼 경우 支出項目에 따라서는  $m$  係數가 상당히 크게 변화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으나 일정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많지 않다 (세탁기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特別消費稅 도입 당시보다 최근에 와서 特別消費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편 단기간내에서도  $m$  係數의 값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家計調查資料가 標本調査資料이므로 標本の變化에 따라  $m$  係數가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개별소비세를 통한 소득분배개선 노력에서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가능성은 家計調查資料로 추정된  $m$  係數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이 表에서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소득분배가 70년대 중반으로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m^*$ 의 값이 커지고 이에 따라  $m^*$ 보다 작은  $m$  係數를 갖는 支出項目의 數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가 나아질수록 個別消費稅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소득재분배효과는 支出側面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당초의 분배상태가 좋을수록 분배를 더욱 개선하는 支出政策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2> 와 <表 3> 에는 각각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主要項目別 稅收實績規模와

稅率 및 具體的 課稅對象의 條件 등이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m$  係數가 높은 품목들과 관련된 항목의 稅收比重은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이들의 소득분배개선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한편 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비중이 큰 稅源인데 앞의 表의 “개인교통유지수리”項目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상당한 분배개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면서 都市家計調查에 제대로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연구에 누락된 항목으로는 (1) 投錢機, 오락용 射倅機器, 기타 오락용품 (2) 당구 및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3) 공기조절기 (4) 모터보트, 요트 (5) 영사기, 촬영기 (6) 용단 (7) 輕油 (8) LPG (9) 투전기시설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 스키장 등에 대한 입장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항목은 고소득층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실제 稅收規模面에서는 <表 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품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니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로 현저한 소득분배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흥업소등에 대한 과세는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稅率引上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稅收增大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V. 結 論

本稿는 個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效果를 추정할 수 있는 간단한 指標를 지니係數로부터

<表 2> 特別消費稅 項目別 稅收規模

(단위 : 億원, %)

課稅對象	1978		1984		1985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1. 보석, 진주, 장갑등	1.3	0.0	1.2	0.0	0.8	0.0
2. 귀금속제품	33	1.0	58	0.7	59	0.6
3. 가 구	20	0.6	15	0.2	18	0.2
4. 특수화장품	35	1.1	93	1.1	102	1.1
5. 공기조절기	39	1.2	138	1.6	185	1.9
6. 냉장고	397	12.3	619	7.1	683	7.2
7. 세탁기	56	1.7	259	3.0	295	3.1
8. TV	284	8.8	769	8.9	536	5.6
9. 전기음향기	101	3.1	103	1.2	46	0.5
10.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63	1.9	18	0.2	17	0.2
11. 승용자동차	232	7.2	725	8.3	880	9.3
12. 피아노	—	—	108	1.2	113	1.2
13. 고급시계	—	—	0.3	0.0	0.9	0.0
14. 사진기	—	—	—	—	—	—
15. 커피·코코아	56	1.7	222	2.6	285	3.0
16. 사 탕	322	9.9	538	6.2	493	5.2
17. 청량음료	220	6.8	495	5.7	528	5.6
18. 빙과류, 발효유 산성음료	27	0.8	181	2.1	222	2.3
19. 천연과실음료	—	—	80	0.9	102	1.1
20. 모사와 직물	40	1.2	67	0.8	62	0.7
21. 휘발유와 경유	1,205	37.1	3,265	37.6	3,946	41.5
22. 과세장소	28	0.9	218	2.5	225	2.4
23. 기 타	82.7	2.6	711.5	8.2	713.3	7.5
24. 小 計	3,159.3	97.4	7,972.5	91.8	8,798.7	92.5
總 計	3,242	100.0	8,684	100.0	9,512	100.0

註 : 輸入分은 포함되지 않았음.

도출하고 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이 指標值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個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係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指標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많은 항목들이 뚜렷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령 個別消費稅 對象品目들이 모두 고소득층에 집중된 支出項目에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個別消費稅制가 지니係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는 것처럼 이것은 垂直的 衡平을 提高시키면서 水平的 衡平을 沮害할 가능성이 크다. 各家計의 特定品目에 대한 선호도는 반드시 소득수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말할 수 있는 이 研究의 政策的



<表 3> 特別消費稅 主要稅率 推移

課稅對象	1978	1984	1987	비 고
보석, 진주, 별갑 등 귀금속제품	100 30	100 30	100 30	87년에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 제도를 도입.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
가 구	20	15	12	78년에는 1개 또는 1조가 10만원 이상, 84년과 87년은 15만원 이상에 한함.
특수화장품	20	20	20	마스카라, 매니큐어, 향수, 헤어린스, 오데코롱, 탈취제, 표백제 등.
냉장고 大型 小型	40 40	40 28	32 22.4	전기가스 유류식의 것으로 대형은 250 리터 이상임.
전기세탁기	40	40	32	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기계, 기구의 세척에 전용되거나 공업용시설기재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안됨.
텔레비전 수상기 칼라 大型	40	40	40	87년에 천연색 액정 TV 에 잠정세율 적용. 가정용에 한하며, 대형은 브라운관의 대각선 길이가 45.72cm 를 초과하는 것임.
小型	40	28	22.4	
흑백	40	5	5	
동관련제품	-	40	32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동수상기.
전기음향기기 大型	30	25	25	축음기, 레코드 플레이어, 스피커, 녹음기 등.
小型	30	10	10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 승용자동차	40	28	22.4	가정형에 한함.
지프	20	10	10	4 른구동.
1,500cc 이하	15	15	15	2 른자동차 포함. 87년 저공해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10.5% 적용
2,000cc 이하	20	20	20	
2,000cc 이하	-	30	30	6 기통 이상.
2,000cc 초과	40	40	40	
피아노 그랜드형	-	30	30	
기타	-	20	20	울건을 포함.
고급시계	-	30	30	1개가 15만원 이상인 것.
고급사진기	-	40	40	1개 또는 1조가 30만원 이상인 것.
커피와 코코아	40	40	40	
설탕	30	30	24	
청량음료	20	20	16	천연약수도 포함됨.
빙과류, 발효유와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87년에는 빙과류로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이 과세대상이 됨.
	20	10	8	78년에는 발효유와 산성음료가 청량음료의 과세대상이었음.
천연과실음료	-	10	10	과채류를 포함.
모사와 동직물				
소모사와 동직물	20	20	16	
방모사와 동직물	10	10	8	
휘발류	160	100	100	87년 무연휘발유에 대해서는 85% 적용.
경유	10	10	10	
액화석유가스	-	10	8	

含意는 特別消費稅로 형평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特別消費稅 전체로서 어느 정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어서 間接稅 전체의 逆進性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稅制의 주된 목적이 소득분배개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個別消費稅의 稅負擔分布는 반드시 안정적이지 않으며 또 동일시점에서 보더라도 水平的 衡平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課稅對象品目的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한된 품목에 대한 特別消費稅로서 상당히 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얻으려고 할 때 稅率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個別消費稅의 귀착은 個別消費項目에 대한 需要 및 供給彈力性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消費分布의 集中度와 消費比重만을 가지

고 소득분배개선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어떤 奢侈性消費財가 있어서 그 소비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품목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할 경우 個別消費稅 課稅分의 대부분이 공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높은 率의 特別消費稅를 부과하더라도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크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奢侈性 消費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크다고 한다면 特別消費稅가 消費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特別消費稅制의 개선방향은 소득분배의 개선보다는 외부효과의 矯正 등 稅導入 이전에 존재하는 相對價格體系 歪曲의 시정, 사용자부담의 효율적 징수, 사회적 고려에 의한 특정소비활동의 억제 같은 제한된 政策機能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郭泰元, 「特別消費稅制度的 主要問題點과 改善의 基本方向」,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123~156.
- 李啓植·裨埈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分析」,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61~114.
- Atkinson, A.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 September 1970, pp. 244~263.
- Blackorby, C. and D. Donaldson, "Ethical Social Index Numbers and the Measurement of Effective Tax / Benefit Progressivity," mime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3.
- Kakwani, N. C.,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Vol. 87, March 1977, pp. 71~80 (a).
- Kakwani, N. C., "Applications of Lorenz

- Curves in Economic Analysis," *Econometrica*, Vol. 45, April 1977, pp.719~727 (b)
- Khetan, C.P. and S.N. Poddar,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vember 1976, pp.613~629.
- Kiefer, D.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Vol. XXXVII, No. 4, December, 1984. pp.497~513.
- Kolm, S. C., "The Optimal Production of Social Justice," in J. Margolis and H. Guitton(eds), *Public Economics*, London: MacMillan, 1969, pp.145~200.
- Musgrave, R. A. and T. Thin, "Income Tax Progression, 1929-4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56, December 1948, pp.498~514.
- Okner, B. A., "Individual Taxe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J. D. Smith (eds.),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NBER, 1975, pp. 45~73.
- Pechman, J.A. and B.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0.
- Reynolds, M. and E. Smolensky, "Post Fiscal Distributions of Income in 1950, 1961 and 1970,"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5, October 1977, pp. 419~438.
- Sen, A.,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73.
- Suits, D.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September 1977, pp. 747~752.